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어업기술원 종합감사 -

2023. 12.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권고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건	0	6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물품구매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1							
3	0 0 0 0 0	동일 유사사업 분할 발주 부적정		1							
4	0 0 0 0 0	전문건설공사 계약 부적정		1							
5	0 0 0 0 0	물품관리 업무 소홀		1							
6	0 0 0 0 0	예산지출과목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물품구매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주의)	4
3.	동일 유사사업 분할 발주 부적정 (주의)	6
4.	전문건설공사 계약 부적정 (주의)	9
5.	물품관리 업무 소홀 (주의)	11
6.	예산지출과목 부적정 (주의)	13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어업기술원
관 계 부 서 00000, 00000000
내 용

경상북도어업기술원 00000 및 00000000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발주·계약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입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의하면 금액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특허(특허 통상실시

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1인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와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1인 견적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입찰을 하거나 추정금액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 ABC이 구매물품에 대한 경북지역 단독 특허 통상실시권자로 등록¹⁾되어 있다는 사유로 입찰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AAA 물품구매(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

- 내용 생략 -

그 결과, 수의계약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었고, 견적서 제출

1)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업체들은 견적서 제출 기회를 상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어업기술원장은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이 집행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소홀
소 관 청	어업기술원
관 계 부 서	00000, 0000000, 00000000
내 용	

경상북도어업기술연구원 00000 및 00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르면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 비율(요율)을 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은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 수립시 00000의 경우 공사 5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60,73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000000은 공사 1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7,33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0000000은 공사 2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2,20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총 8건의 공사에 대해 합계금액 3,190,26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표] 2021년~2023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업 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어업기술원장은

①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동일 유사사업 분할 발주 부적정
소 관 청	어업기술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다만,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²⁾(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2021.1.1. 폐지,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따라서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는 단일 사업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고, 통합발주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발주부서인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OOOOO BBB팀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사업의 내용이 유사³⁾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 계속 추진되는 등 사업수행 시기가 같은 사업인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을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부서인 경상북도 어업기술원 OOOOO CCC팀에서는 분할 발주된 사업의 세부내역서 등의 사업내용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단일 사업으로 통합 발주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부서와 같은 사유로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통합 발주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87.745%) 적용으로 4,503천 원(36,744천 원 - 32,241천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 발주로 인하여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표] 동일 유사사업 분리발주 수의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 상대자	계약금액	통합발주시 최저 낙찰 예산금액	유사내역
합계	2건		0	32,241	
2022.---.---	가나다라 ABCDE	■	생략	32,241	창문철거, 각종철거, 폐기물처리 등
2022.---.---	가나다라 FGHIJ	▲	생략		창문철거, 각종철거, 폐기물처리 등

※ 어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3) 분할 발주된 사업이 창문철거, 각종철거, 폐기물처리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함

조치할 사항 어업기술원장은

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공사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어업기술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공사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5조의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업종에 맞게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고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 계약은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23. 1. 31. 가나다라 관리동 리모

텔링 공사(계약상대자 EEE) 등 3건을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부당하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전문건설공사 계약 부적정 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어업기술원장은

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어업기술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처분·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태그를 붙인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정기재물조사 지침」⁴⁾에 따르면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전자태그를 발행한 물품은 전자태그 단말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4)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4134(2023. 5. 23.)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안내

따라서 어업기술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재물조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전자태그단말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거나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물조사 전에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여야 한다.

그런데 종합감사 기간 중 확인 한 바 아래 [표] 와 같이 2010년부터 도입된 전자태그를 활용한 정기 재물조사에서 일부 물품들이 매년 누락 된 것으로 파악되며, 2023년 정기 재물조사 현재 부착대상 1,177개의 물품 중 1,014개만 부착하고 163개의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전자태그 미부착 물품 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어업기술원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지출과목 부적정
소 관 청	어업기술원
관 계 부 서	00000
내 용	

경상북도 어업기술원은 「지방재정법」 등 회계법령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타법폐지)⁵⁾,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연말, 설, 명절(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2020.12.3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에 따른 폐지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명절 선물 등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속 직원들의 식사 및 간식 제공, 격려품 제공 등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업기술원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명절, 연말연시 등에 소속 직원들의 격려 선물·식사·간식 제공, 명절선물 제공 등 15건을 부서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 내용 생략 -

2.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2. 12. 19.)에 따르면 공공운영비는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용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을 운용함으로써 소모되는 차량소모품 구입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어업기술원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공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사용하면서 2021. 8. 10. 요소수와 2023. 6. 14. 자동차용 워셔액 구입비 등 총 2건 100,000원을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다.

[표2]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내역

- 내용 생략 -

그 결과, 공공운영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세출예산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집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어업기술원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